

중국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이정(Jing Li)

계명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주저자)

박성호(Sungho Park)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부교수(교신저자)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중국 국제상사중재제도의 발전과정과 상사분쟁
현황 | 참고문헌 |
| III. 중국 중재법의 주요 내용 | ABSTRACT |

국문초록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사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체제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연구는 필수 불가결하다. 근래 중국은 국제표준과 시장경제에 맞추어 국내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외국기업들에게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법규의 내용에 한계점과 실무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중국 상사중재제도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일부 구별 적용, 임시중재 불인정, 당사자자치의 제한, 중재기관의 독립성 부족, 중재에 대한 사법간여, 판정집행의 곤란 등 다른 국가와 차이점이 있다. 또한 중국의 중재기관에서는 중재절차 중에 판정부가가 직접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결과를 판정서로 작성하는 중재와 조정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본 논문은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법적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기업과의 상사분쟁해결에 대한 법적·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중국 중재법, 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 상사중재, 상사중재절차, 중재합의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3A2046715).

I. 서론

국제상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당사자간의 상사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사분쟁에 있어서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특히 국제소송은 피고국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고, 원고국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피고국에서의 집행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이하 ‘ADR’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제도에는 알선, 조정, 중재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특히 중재는 상사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들의 사전 또는 사후 합의에 의하여 지정한 중재기관의 중재절차에 따라 선정된 중립적인 중재인의 자유재량에 의해 내린 중재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신뢰성 있고 대표적인 중재기관¹⁾들이 전 세계적으로 설립되어 있으며 많은 국제상사분쟁이 중재로 해결되고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세계 1위의 무역대국²⁾이며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³⁾으로서 상사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는데, 사회주의 국가체제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연구는 필수불가결하다. 근래 중국은 국제표준과 시장경제에 맞추어 국내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외국기업들에게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법규의 내용에 한계점과 실무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의 특징과 중재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중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법과 국내외 관련 논문 등의 문헌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중국의 중재관련 규범과 기관,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세계 주요 중재기관으로는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AAA(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LCIA(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SIAC(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및 CIETAC(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등이 있다.

2) WTO, World Trade Report 2015(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wtr15-1_e.pdf 2017.06.01. 최종접속)

3) 중국은 2004년부터 우리의 최대교역상대국임(현대경제연구원 2, 2014).

II.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발전과정과 상사분쟁 현황

1.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발전과정

중국의 상사중재제도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 수립된 후 중국 정부원(현재 국무원)이 국민주권 보호와 국제경제 및 무역 발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국제상사활동에 종사하는 국민들과 경제주체에 부여된 합법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1956년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CCPIT) 내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對外貿易仲裁委員會: Foreign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FTAC)와 중국해사중재위원회(中國海事仲裁委員會: 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CMAC)를 설립함으로써 구축되기 시작되었다.⁴⁾ 두 중재기구는 섭외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민간기구로서 중외공동기업 및 합자기업의 분쟁과 국제상사분쟁을 다루고 있다.

중국의 국제상사중재제도는 대외무역을 성장시키기 위해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한 1980년대 개혁 개방 정책과 대외경제무역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중재의 역할과 국제상사중재법 및 제도의 조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1980년 2월 대외무역중재위원회(FTAC)가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對外經濟貿易仲裁委員會: Foreign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FETAC)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1988년에 기존의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이하 ‘CIETAC’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叶明 2007, 125-128).

또한 1991년 사법(私法)에 관한 국제협약에 참여하거나 승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국제협약의 가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1987년에 가입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58; 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내려진 판정에 대하여 중국 내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The Arbitration Law of Republic of China, 이하 ‘중재법’이라 한다)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을 참조하여 제정되었고, 1994년 8월 제8회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통과시켜 1995년

4) 중화인민공화국이 형성되기 이전의 중재제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9월부터 발효되었다. 이 중재법은 국제중재에 적용되어야 할 규정들을 포함하여 중재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중재제도는 국내중재와 섭외중재로 구분되어 있는데, 국내중재에는 경제계약중재, 노동중재, 기술계약중재, 소비중재, 저작권중재, 부동산중재 등이 있고, 섭외중재에는 국제경제무역중재와 해사중재가 있다. 또한 중재관할권에 따라 구분하면 중재합의에 의한 중재와 행정권에 의한 중재로 나눌 수 있는데, 중재합의에 의한 중재에는 기술계약중재, 대외경제무역중재, 해사중재 등이 포함되고, 행정권에 의한 중재에는 경제계약중재, 노동중재 등이 있다. 행정중재는 국가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중재이며 엄격히 말하면 중재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특수한 행정사법의 일종이다.

2. 중국의 상사분쟁 현황

CIETAC은 2006년 CIETAC 중재규칙(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仲裁規則)을 개정하여 섭외상사중재사건에 한하던 CIETAC의 관할범위를 국내 상사중재사건에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CIETAC은 1,821건에 달하는 국내외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양적인 측면에서는 국제적인 중재기관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표 1〉 CIETAC의 중재사건 처리현황

(단위: 건)

연도	북경총회		상해분회		화남분회		톈진금융중재센터		서남분회		총계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2010	섭외 241 국내 431	664	섭외 102 국내 374	507	섭외 70 국내 112	200	섭외 1 국내 11	4	섭외 4 국내 6	7	섭외 418 국내 934	1382
2011	섭외 237 국내 431	645	섭외 149 국내 374	417	섭외 80 국내 138	188	섭외 4 국내 17	21	섭외 0 국내 5	11	섭외 470 국내 965	1282
2012	섭외 303 국내 672	688	섭외 16 국내 21	5	섭외 5 국내 11	2	섭외 3 국내 16	16	섭외 4 국내 9	9	섭외 331 국내 729	720
2013	섭외 322 국내 736	888	섭외 43 국내 116	100	섭외 7 국내 11	18	섭외 0 국내 10	10	섭외 3 국내 8	10	섭외 375 국내 881	1043
2014	섭외 316 국내 1005	1201	섭외 56 국내 139	177	섭외 11 국내 45	26	섭외 0 국내 25	19	섭외 4 국내 9	9	섭외 387 국내 1223	1432
2015	섭외 327 국내 1208	1468	섭외 81 국내 192	225	섭외 17 국내 74	73	섭외 2 국내 26	24	섭외 5 국내 31	28	섭외 437 국내 1531	1821

자료: 중국국제경제중재무역위원회(CIETAC) 통계자료)

중국의 중재 이용도 추이를 분석해 보면, 2010년도 비해 2011년도 북경총회의 분쟁접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2010년도 비해 2011년도 기준으로 상해분회는 약 10% 증가하였으며, 화남분회는 약 20% 증가하였다. 2012년도에는 국내외 중재 접수건이 총 1,060건이고, 심리 판결된 건수가 720건, 금액은 1,540억 위안을 초과했다. 국제상사중재사건 331건 가운데 중재판정을 통해 78% 정도 해결하였으며, 18%는 당사자의 철회로 끝났으며, 나머지 4% 정도는 화해로 해결되었다. 2012년 CIETAC에서 접수된 중재사건 당사자들은 46개 국가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분쟁처리에 대한 공신력이 광범위하게 인정을 받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이후 CIETAC의 분쟁접수건수를 살펴보면, 섭외사건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국내분쟁사건이 급속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북경총회에 접수된 분쟁건수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Ⅲ. 중국 중재법의 주요 내용

1. 중재법의 제정과 구성

중국의 중재법은 1994년 8월 31일에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⁵⁾ 이것은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에 최초로 공포되어 전문적으로 중재사안을 조율하는 법률로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요구가 충분히 고려되었고 외국의 선진 중재제도의 경험과 국제 관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뉴욕협약과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에서 채택한 모델중재법을 참고하였다. 중국 중재법의 목적은 경제무역 분쟁을 공정하고 적시에 중재하는 것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國務院法制辦公室 2008, 17).

중국 중재법은 총칙을 포함하여 총 8개장⁷⁾에 걸쳐 8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재계약(제4조~제6조), 중재위원회와 중재협회(제10조~제15조), 중재절차(제21조~제57조), 판정취

5) <http://www.cietac.org/index.php?m=Page&a=index&id=40&l=en>(2017.5.16. 최종접속). 2015년 접수건수 중 홍콩중재센터에 접수된 섭외중재 5건은 표시하지 않았음. 5건의 섭외중재 접수건수 중 3건은 판정되었음.

6) 1994년 중재법 제정 전의 중재제도는 총 14개 법률, 182개 행정법규, 190개의 지방성 법규로 분산되어 있었다(임지한 2011, 85)

7) 제1장 총칙, 제2장 중재위원회와 중재협회, 제3장 중재협의, 제4장 중재절차, 제5장 재결철회의 신청, 제6장 집행, 제7장 해외 중재의 특별규정, 제8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의 신청(제58조~제61조), 중재판정의 집행(제62조~제64조), 국제중재 특별규정(제65조~제7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중재법의 특성

중재는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중국 중재법 제8조), 중재위원회는 직할시 및 성·자치구(直轄市 및 省·自治區), 인민정부 소재지 시의 인민정부 관련부서와 상업회의소에서 통일적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중국 중재법 제10조). 그리고 중재기관을 행정부문에서 분리함으로써 민간성을 강화하고 중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14조에서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되고, 행정기관과는 어떠한 연속관계도 없으며, 중재위원회 사이에도 연속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중재제도도 민간자치법정제도로서의 원칙을 준용하고 있다.

1) 당사자 자치의 원칙

당사자 자치(party autonomy) 원칙은 중국 중재법에서도 중재제도의 핵심원칙이다. 중국 중재법 제4조는 “당사자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중재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중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방 당사자의 중재신청은 중재위원회가 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중재합의와 절차가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된 의사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2) 중재의 독립성

중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중재조항과 중재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먼저, 중재조항의 독립성은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되거나, 매매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종료된 경우와 같이 주된 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중재를 통하여 해당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중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재합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주된 계약의 변경, 해제, 종료 또는 무효로 인하여 중재합의가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재기관은 조직과 기관의 구성 면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되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중재 활동 또한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중재기관은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상 또는 운영상의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중국 중재법 제8조는 “중재는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하며 행정 기관이나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표명하고 있다.

3) 공평성·합리성의 원칙

중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로서 공평성과 합리성의 원칙은 모든 분쟁해결절차의 일반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에서 중립을 지키고 당사자를 평등하게 대하며 사실에 근거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에 대한 판정을 내려야 한다. 중재인은 일반적으로 분쟁 당사자에 의해 선정되는데, 일방 당사자의 이익을 대표하여서는 안 되며, 양 당사자중 일방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도 아니 된다. 또한 중재인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정하여야 한다. 즉 중재인이 중재절차 진행 중 진술, 증거 제출, 구두 변론 등 분쟁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기회와 조건은 균등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소금지 원칙

중국 중재법 제5조에서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이루고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단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중재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분쟁은 먼저 중재절차로 진행하고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중재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분쟁해결방식이기 때문에 양당사자는 그 합의에 귀속하여야 한다. 만약에 일방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지키지 않고 중재합의 중에 약정된 쟁점사항을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3. 중재합의

1) 중재합의의 방식과 내용

중재합의는 본 계약서 중에 규정한 중재조항이나 기타 서면방식으로 분쟁 발생 전 또는 발생 후에 합의한 중재신청 합의를 포함한다. 중재합의는 세가지 구성요소인 중재합의의 의사표시, 중재사항, 중재위원회 선정이 갖추어져야 한다(중국 중재법 제16조). 그러나 약정한 중재합의 사항이 법률에서 규정한 중재범위를 벗어난 경우, 민사행위 무능력자가 체결한 중재합의 경우, 그리고 일방이 협박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재합의를 체결하게

한 경우에 그 중재합의는 무효이다(중국 중재법 제17조).

또한, 중재합의가 중재사항 또는 중재위원회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가 보충합의를 할 수 있고, 보충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중재합의는 무효이다(중국 중재법 제18조).

2) 중재합의의 효력과 범위

중재합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계약의 변경, 해제, 종료 또는 무효는 중재합의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중국 중재법 제19조). 중재판정부는 계약의 효력을 확인할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그 효력에 대해 결정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이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고 다른 일방이 인민법원에 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제1회 심리기일 전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중국 중재법 제20조).

4. 중재기관

중국의 중재기관은 국내중재기관과 국제(섭외)중재기관을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내중재를 담당하는 중재기관으로서 중재위원회와 중재협회로 구성되어 있다. 중재위원회는 직할시와 성·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에 설립할 수 있고, 또한 필요에 따라 기타 지역의 시에 설립할 수도 있으나, 매 행정구획에 따라 설립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중재위원회는 해당 시의 인민정부조직의 유관부서와 상업연합회가 통일적으로 조직하도록 되어 있고, 중재위원회의 설립은 성·자치구·직할시의 사법행정부서에 보고하고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중국 중재법 제10조). 또한 중재위원회는 위원회 명칭·주소·규정, 필요한 재산, 당해 위원회의 조직 인원⁸⁾, 초빙 중재인⁹⁾이 있어야 하고, 중재위원회의 규정은 중재법에 의거하여 제정하여야 한다(중국 중재법 제11조). 또한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에 독립되어 있으며 행정기관과 예속관계가 없다. 중재위원회 간에도 서로 예속관계가 없다(중국 중재법 제14조).

8) 중재위원회는 주임 1명~2명, 부주임 4명, 위원 10~11명으로 구성되고, 주임, 부주임, 위원은 법률·경제무역전문가와 실제적 작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담당한다. 중재위원회 조직에서 법률·경제무역전문가는 전체 조직원 중에서 2/3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중국 중재법 제12조).

9) 중재위원회에서 초빙하는 중재인은 중재업무에 종사하거나, 변호사나 판사 업무에 종사한 지 만 8년이 되는 경우, 법률연구·교학업무에 종사하고 고급직명을 갖추고 있거나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경제무역 등 전문업무에 종사하며 고급직명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동등한 전문수준을 갖추고 있는 경우 중 하나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중재위원회는 서로 다른 전문분야에 따라 중재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중국 중재법 제13조)

그리고 중재협회는 각 지역의 중재위원회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회단체법인이다. 중국중재협회의 규정은 전국회원총회에서 제정한다. 중국중재협회는 중재위원회의 자율적 조직이며 규정에 근거하여 중재위원회 및 조직인원, 중재인의 규율위반행위에 대하여 감독한다. 중국중재협회는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중재규칙을 제정한다(중국 중재법 제15조).

현재 중국에 상설되어 섭외사건을 주로 다루는 국제상사중재기관은 CIETAC과 CMAC¹⁰⁾가 있다.¹¹⁾ CIETAC은 중재규칙¹²⁾ 제3조에서 “CIETAC 중재위원회는 국제 또는 대외 분쟁,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그리고 대만지역과 관련된 분쟁, 그 외에 국내분쟁으로 인한 중재신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외 상사분쟁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다. CIETAC 본부는 현재 북경에 있으며 국내외 중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CIETAC은 화남분회¹³⁾, 상해분회, 서남분회¹⁴⁾를 설치하였고, 천진(天津)에 국제경제금융중재센터를 설립하여 금융과 관련된 국제상사분쟁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CIETAC 중재규칙 제4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분쟁을 CIETAC에 중재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CIETAC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데, 만약 당사자가 중재지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약정하거나, 본 중재규칙의 관련 내용을 변경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다.

또한 CIETAC 중재규칙 제6조에 따르면, 중재위원회는 중재합의의 존재 및 효력, 중재안건의 관할권에 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중재위원회가 표면적인 증거에 의한 중재관할권의 결정에 따라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재판정부가 심리과정 중 표면적인 증거와 불일치한 사실 또는 증거에 의하여 관할권 결정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중재위원회는 관할권을 재결정할 수 있다.

중재기관의 선택은 중재합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CIETAC을 중재기관으로 선택했을 경우 CIETAC 중재위원회에서 분쟁당사자의 표면적인 증거를 통해 관할권에 문제가 없으면 CIETAC에서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다음은 CIETAC의 중재절차를 통해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0) CMAC(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中國海事仲裁委員會)는 중재에 의한 선박, 해상운송·보험관련 분쟁을 독립적으로 해결하고자 국무원의 결정으로 1959년 1월 8일 설립되었다.

11) 국제상사분쟁사건의 접수에 대해 각 지방중재위원회도 결코 배제되어 있지는 않다.

12) 현재 제8차 개정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중재규칙이 사용되고 있다.

13) 화남분회(華南分會)는 深圳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해분회(上海分會)는 상해에 위치하고 있다.

14) 서남분회(西南分會)는 重慶에 위치하고 있다.

5. 중재절차

1) 중재신청과 답변서 제출

(1) 중재신청

CIETAC 중재절차는 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개시된다(CIETAC 중재규칙 제11조).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본 규칙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는데, 신청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자료와 중재신청의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재위원회의 중재비용표에 정한 중재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CIETAC 중재규칙 제12조).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분쟁의 발생 전 또는 후에 당사자 간에 합의한 중재합의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고 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중국 중재법 제24조), 신청인의 중재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수리된 경우 즉시 중재통지서, 중재위원회 규칙, 중재인명부를 양 당사자에 1부씩 발송함과 동시에 신청인의 중재신청서 및 첨부 서류도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만약, 신청인의 중재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접수한 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신청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이 일정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중재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수리되지 않는다(중국 중재법 제25조, CIETAC 중재규칙 제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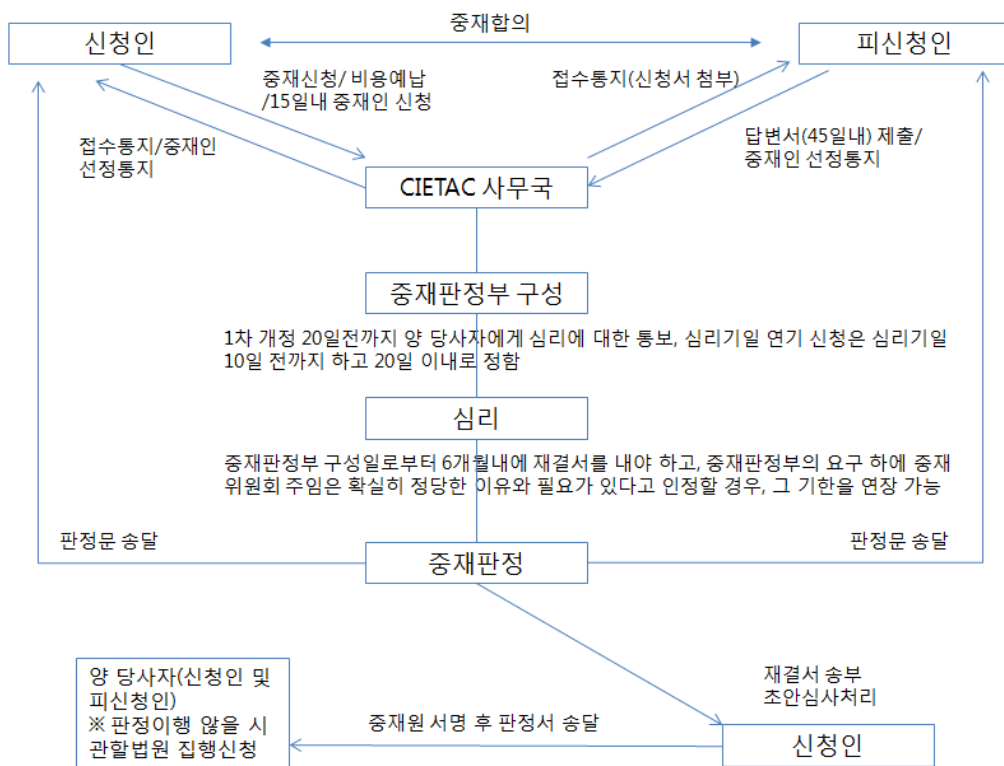
또한 신청인은 (a) 해당 계약들이 주계약과 보조계약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해당 계약들이 같은 특성의 법적 관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같은 당사자들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 (b) 같은 거래 또는 거래들의 같은 시리즈에서 일어난 분쟁들, (c) 해당 계약들에서 중재합의들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경우에 속하는 다수계약인 경우 합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CIETAC 중재규칙 제14조).

신청인은 자신의 중재신청 취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중재판정부에서 그 변경 신청 제출시기가 너무 늦어 중재절차의 지연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신청을 받아 주지 않을 수도 있다(CIETAC 중재규칙 제17조).

(2) 답변서 제출

중재위원회로부터 신청인의 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은 중재통지서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기간연장을 요청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요청사유를 판단하여 기간연장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구

성되기 전인 경우 중재원이 결정한다. 답변서는 피신청인 또는 그의 위임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며, 중재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및 그 답변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그 이유와 관련 서류 및 답변의 근거가 되는 다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을 넘긴 답변서의 수리 여부는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고, 설사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재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중국 중재법 제25조, CIETAC 중재규칙 제15조).



〈그림 1〉 중국 CIETAC 국제상사중재절차

(3) 반대신청

만약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이 있을 경우, 중재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기간연장을 신청한 이유를 소명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기간연장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인 경우 중재원이 결정한다.

피신청인은 반대신청시 반대신청서에 반대신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중재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를 기재하고 관련 자료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중재위원회의 중재 비용표에 정한 중재비용을 일정기간 내에 예납해야 하는데, 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반대신청서는 불수리 처분된다.

중재원은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서가 수리된 경우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서 접수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이 기간연장을 신청한 이유를 소명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기간연장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인 경우 중재원이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는 제출기한이 지나서 제출된 반대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재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CIETAC 중재규칙 제16조).

피신청인은 자신의 반대신청 취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중재판정부에서 그 변경신청 제출시기가 너무 늦어 중재절차의 지연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CIETAC 중재규칙 제17조).

(4) 제출 서류

당사자들로부터 제출된 모든 중재 서류들은 중재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모든 중재 서류들은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 중재판정부의 동의 또는 중재판정부의 다른 결정이 없다면 중재원이 중재판정부와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CIETAC 중재규칙 제20조). 당사자들은 중재신청서, 답변서, 반대신청서, 그리고 다른 중재서류를 제출할 때, 각 5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다수 당사자인 경우, 수에 맞게 부수를 추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재산보전 또는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에 맞추어 부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단독 중재인일 경우 제출 부수는 2부까지 감소될 수 있다(CIETAC 중재규칙 제21조).

(5) 임시조치

당사자는 중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임시조치(긴급중재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그 법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한 관할법원에 당사자의 신청을 이송해야 한다. 해당법률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당사자는 중재원에 중재위원회의 긴급 중재인 절차에 따라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 중재인은 해당법률에 따라 필요하거나 적당한 긴급 조치를 명령하거나 시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긴급 중재인의 결정은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당사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해당 법률 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필요하거나 적당한 임시조치를 명령하거나 시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와 관련된 적절한 보호 경비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¹⁵⁾

2) 중재판정부

(1)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판정부는 1인 또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고,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에 의하거나 CIETAC 규칙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중국 중재법 제30조, CIETAC 중재규칙 제25조). 중재위원회는 보유하고 있는 전문분야별 중재인 명부 중 공정하고 올바른 사람을 중재인으로 위촉하여 중재판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중재인은 중재업무에 만 8년 종사한 경우, 변호사 업무에 만 8년 종사한 경우, 판사 역임 기간이 만 8년인 경우, 법률 연구 및 교수업무에 종사하고 고위 직책을 갖는 경우, 법률지식을 갖추고 경제무역 등 전문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위 직책을 갖거나 그와 동등한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중국 중재법 제13조).

(2) 중재인의 회피 및 기피

중재인은 중재심리의 직접적인 집행자이므로 중재인의 인품, 지식 등의 요소는 사건에 대하여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중재인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 또한 중재사건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따라서 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는 중재인의 회피 및 기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기피와 회피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일률적으로 회피로 사용하고 있다(김정애 2014, 158-159).

중재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중재인과 사건 간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당해 중재인은 회피되어야 한다. 소위 이해관계란 곧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중재인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중재인과 당사자 일방이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중재인이 이미 사건의 공정한 심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의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건의 판정 전에 중재인이 분명하게 판정결과에 관계없이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뚜렷한 기울어짐이 있다는 것을 밝힌 경우를 말한다.

또한 당사자에 의하여 선정되거나 지정된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대하여 상당한 이

15)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임시조치를 신청하면 관할 중급인민법원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결정권은 없었으나, 2015년 개정 CIETAC 중재규칙에서 중재판정부에게 이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였다(박규용·서세걸 51-52, 2015).

유가 있다고 의심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를 설명하고 증거도 함께 제시하여 중재위원회에 당해 중재인의 기피를 청구할 수 있다(중국 중재법 제29조).

중재법은 기피와 회피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중재인의 회피와 기피 여부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결정한다.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인을 맡았을 때에는 중재위원회 전체에서 결정한다(중국 중재법 제36조, CIETAC 중재규칙 제33조). 중재인이 회피와 기피로 인하여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래 당해 중재인을 선정 또는 지정한 절차에 따라 대신할 중재인을 다시 선정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중국 중재법 제37조).

(3) 중재심리

당사자는 심리방식을 약정할 수 있는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안건을 심리할 수 있다(CIETAC 중재규칙 제35조 제1항). 사건을 심리할 때 구술심리가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가 서면심리에 의해 진행할 것을 동의하고 중재판정부가 이에 동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구술심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신청서, 답변서, 기타 자료만을 근거로 서면심리에 의해 사건을 심리하고 판정할 수 있다(중국 중재법 제39조, CIETAC 중재규칙 제35조 제2항).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는 질문식 또는 변론식으로 심리할 수 있다(CIETAC 중재규칙 제35조 제3항).

구술심리는 당사자들간에 심리장소에 대해 합의한 경우, 합의된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하는데,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원 또는 중재위원회지부/중재센터위원회에서 수리한 사건은 상해에서 개정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다만 중재판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재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장소에서도 가능하다(CIETAC 중재규칙 제36조 제2항).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고 첫 번째 개정일 20일 전에 양당사자에게 개정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개정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연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연기여부는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다(CIETAC 중재규칙 제37조).

중재는 비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 기밀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한다(중국 중재법 제40조, CIETAC 중재규칙 제38조 제1항). 비공개심리로 진행하는 경우, 양당사자, 중재대리인, 중재인, 증인, 통역관, 관련전문가, 지정된 검정인 및 기타 관련된 사람들은 해당 사건의 실체 및 절차에 관한 상황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된다(CIETAC 중재규칙 제38조 제2항).

중국에서는 서면통지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중재판정부에 출석하지 않거

나 중재판정부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장한 경우에는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서면통지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중재판정부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재판정부의 허가없이 중도에 퇴장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진행하고 판정을 내릴 수 있다(중국 중재법 제42조, CIETAC 중재규칙 제39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CIETAC 중재규칙 제41조), 중재판정부가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증거를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중국 중재법 제43조). 증거는 반드시 개정 시에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는 증거에 대해 대질할 수 있다(중국 중재법 제45조).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전문성을 띤 문제에 대하여 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약정한 감정부서에 교부하여 감정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정부서에서 감정할 수도 있다(중국 중재법 제44조, CIETAC 중재규칙 제44조). 증거가 멸실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 아래서 당사자는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중국 중재법 제46조).

중재절차는 양쪽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가 중재절차의 중지를 요구하거나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경우 중재절차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중지 기간이 만료된 경우 중재절차는 재개된다. 이러한 중지 또는 재개여부는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하는데,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중재원장이 결정한다(CIETAC 중재규칙 제45조).

그리고 당사자는 중재신청의 전부 또는 중재반대신청 전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중재신청 전부를 철회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에 대한 심리 및 판정을 진행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전부의 반대신청을 철회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심리 및 판정을 진행할 수 있다. 신청과 반대신청이 전부 철회된 경우 사건은 각하될 수 있다.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는 중재원장이 각하 결정을 하고, 중재판정부 구성 후에는 중재판정부가 각하 결정을 한다(CIETAC 중재규칙 제46조).

4) 중재판정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판정부의 요구가 있고 중재원장이 그 필요성과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경우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한은 상기 6개월 기간의 기산에서 제외된다(CIETAC 중재규칙 제48조).

중재판정부는 사실 및 계약의 조건에 근거하여 법률 및 국제관례를 참조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독립하여 공정하게 판정을 하여야 한다. 만약 분쟁에 있어서 준거법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에 따르고, 이러한 합의가 없거나 법률의 강제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분쟁내용에 적용할 법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판정서에 분쟁사실, 판정이유, 판정결과, 중재비용 부담, 판정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당사자간에 분쟁사실과 판정 이유를 기재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당사자간의 화해합의의 내용에 따라 판정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분쟁사실과 판정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에 당사자가 판정을 이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한과 기한 내 이행을 지체할 경우의 책임을 확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초안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중재위원회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하도록 지시하면 중재판정부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판정서를 정정하고 서명한 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반드시 중재위원회 날인을 받아야 한다.¹⁶⁾

3인 중재 심리 사건의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 전원 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소수의 의견을 기록하여 판정서에 별첨할 수 있으나 이 의견은 판정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만약 중재판정부가 다수의견을 형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판정한다. 기타 중재인의 의견을 기록하여 판정서에 별첨할 수 있으나 이 의견은 판정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의장중재인 또는 단독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판정되고 이들이 서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서는 다수 중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른 의견을 가진 중재인은 판정서에 서명할 수도 있고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재판정의 법률적 효력 발생일은 중재판정서의 작성일자이며, 중재판정서는 법적 확정력을 가지고 당사자 양쪽에 구속력을 갖는다. 당사자 어느 일방도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며 기타 어떠한 기구에도 중재판정 변경을 청구하지 못한다(CIETAC 중재규칙 제49조).

또한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요청하고 중재판정부가 동의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최종판정 전에 사건의 일부 주장에 대하여 먼저 부분판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부분판정은 확정되고 양당사자를 구속한다. 당사자가 부분 판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중재절차의 진행과 중재판정부의 최종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CIETAC 중재규칙 제50조).

중재판정부가 어떤 문제를 중재판정서에서 생략하기로 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서가 작성된 후 합리적인 시간 안에 추가판정을 할 수 있다. 만약 중재판정에 누락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중재판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16) 당사자는 중재판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판정서의 오기, 오타, 계산 오류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오류에 대하여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그 수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가 중재판정서에 존재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서면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정하여야 한다(CIETAC 중재규칙 제53조 제2항).

누락 사항에 대한 추가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누락 사항이 있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상기 서면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판정을 하여야 한다(CIETAC 중재규칙 제54조).

중재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증거17)를 제시하여 중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중재위원회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급인민법원은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사실 조사와 심사 후 중재판정이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에 해당할 경우 또는 판정이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배한다고 여겨질 경우 중재판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이러한 결정은 중급인민법원이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중국 중재법 제5장).

5) 판정의 이행

당사자는 중재판정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서에 이행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판정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법률에 근거하여 관할법원에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CIETAC 중재규칙 제55조, 중국 중재법 제62조). 만약 일방 당사자가 판정의 집행을 신청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판정의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인민법원은 집행을 중지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판정철회 신청자가 증거를 제출하여 판정에 민사소송법 제2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황 중 하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관할 인민법원이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집행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판정 취소를 결정한 경우 집행의 종결을 결정하고 판정취소신청이 기각될 경우 집행하도록 결정한다.

〈표 2〉 중국 중재에 대한 사법심사 현황

구 분		중재판정부	관할 중급인민법원
중재합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청구		결정(선택적 청구)	결정(선택적 청구)
		당사자 일방이 중재판정부에 다른 일방이 법원에 각각 청구한 경우 법원이 재정	
중재 판정	국내중재 (중재법 제58조)	-	취소 결정 (요건: 중재법 제58조)

17) 중재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①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② 판정사항이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위원회가 중재할 권리가 없는 경우, ③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법정절차에 위배되는 경우, ④ 판정이 근거하고 있는 근거가 위조된 경우, ⑤ 상대방 당사자가 충분히 공정한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숨긴 경우, ⑥ 중재원이 당해 안건을 중재할 시 뇌물수수·사적이익도모·판정 왜곡의 행위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은 사유는 중국 민사소송법 제213조에서 중재판정 집행거부 신청시에도 동일하다.

구 분		중재판정부	관할 중급인민법원
취소	섭외중재 (중재법 제70조)	-	취소 결정 불가능 (요건: 민사소송법 제257조)
	재(再)중재결정 (중재법 제61조)	법원의 취소결정을 거절 가능	재(再)중재 가능여부 판단 및 결정
	중재판정 집행거부	국내중재 (중재법 제63조)	집행거부 결정 (요건: 민사소송법 제213조)
		섭외중재 (중재법 제71조)	집행거부 결정 (요건: 민사소송법 제258조)

자료: 김태경 2006, 19에서 참조하여 재작성.

6. 조정과 화해

CIETAC 중재규칙 제47조에 따르면, 양당사자가 조정을 원할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양당사자는 스스로 화해할 수도 있다. 이때는 양당사자가 화해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스스로 협상을 통하여 화해합의를 했을 경우에 중재위원회로 인하여 달성한 중재합의와 그들의 화해합의를 근거로 중재위원회에게 신청하여 한 명의 단독중재인을 지정하여 화해합의의 내용에 따라 중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楊建紅 2003, 38-44).

한편 중국 중재법 제51조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양당사자가 조정을 원하면 중재판정부는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하지 못하면 즉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고 합의를 달성하면 중재판정부는 조정서를 작성하거나 합의의 결과에 따라 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서는 판정서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중재절차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조정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여 중재와 조정을 결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고 볼 수 있다.

IV. 결 론

이상에서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하여 중재법과 CIETAC 중재규칙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재는 원칙적으로 자주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민간기구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중재판정만이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중국은 1995년 UNCITRAL 모델 중재법 외에 영미의 중재법 등을 수용하여 중재법을 제정한 후 중재규칙 개정과 다양한 사

법해석 등을 통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였다. 하지만 중국에서 중재는 정부와 사법당국의 간여로 인해 중재의 독립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각 지방과 하부 통제를 위한 수많은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 제정 및 사법해석 등을 통한 법 적용의 문제점 등은 중국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중국은 기관중재국가로서 당사자의 자치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였으나 2005년 중재규칙에서는 당사자의 합의로 다른 기관의 중재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5년 개정중재규칙에서는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국제적인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등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여전히 외국기업들에게는 차별적 요소가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중국의 중재 및 중재기관 이용을 주저하게 하고 있다.

클레임과 분쟁이 빈번한 국제상거래에서 제3자를 통한 분쟁해결방법 중에서 강제적 구속력을 가진 중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유리한 중재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중국기업과 거래하는 한국기업이라면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해결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계약과정에서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차선택으로 상대방 국가인 중국에서의 중재를 선택하되 조항에 그 중재기관의 중재인명부 외에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약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중재제도를 잘 숙지하여 절차상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중재절차 진행과정에서 중국 중재법상 외국공민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외국국적 중재인도 중재인으로 초빙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법에 정통한 현지 중재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은 스스로 하지 않았을 경우 집행신청 대리인은 중국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중국공민인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와 같이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에서 지역보호주의를 통한 자국민 우대 성향이나 집행신청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결국 국제상거래는 당사자자치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계약 체결시 불리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국제상거래 당사자가 근본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상호 계약이행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은 어떤 곳에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간과할 수 없다.

중국의 경우 국제상사중재의 이용률이 매년 20~30% 이상 증가하고 있고 분쟁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중재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상사중재에 있어서 우리는 중국과 경쟁자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여 상호 중재제도에 관한 협력을 통해 법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용일·하명근,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인 선정에 관한 비교연구-국제중재규칙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pp.215-235, 2006.
- 김정애, “중국에서의 국제상사분쟁의 해결방안에 대한 소고-소송과 중재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41호, 한국법학원, pp.151-182, 2014.
- 김태경, “中國商事仲裁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式”, 「무역상무연구」, 제2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pp.3-29, 2006.
- 박규용·서세걸, “중국 중재제도의 새로운 발전과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pp.49-70, 2015.
- 비종위, “중국 현행 중재제도의 결함 및 개선”, 「중재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pp.67-72, 2003.
- 서경·오원석, “중재합의시 중재지 결정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pp.429-453, 2010.
- 원성권, “A practical approach to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Pakistan”, 「통상정보연구」, 제16권 제5호, 한국통상정보학회, pp.67-86, 2014.
- 임지한, “한국과 중국의 중재제도 비교”, 「국제법무연구」, 제15권 제1호,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2011.
- 임희등, “중국의 중재판정 집행거절의 현황 및 문제: 98개 사안을 표본으로 한 실증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국제사법학회, pp.311-355. 2014.
- 전대규, 「중국민사소송법」, 서울: 박영사, 2008.
- 정용균, “중국에서의 상사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동향과 제도개선 연구: 외국투자자 관점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pp.133-167, 2010.
- 정용균, “한국 상사중재의 연구방법론 : 학문융합적 관점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pp.151-176, 2011.
- 차경자, “중국의 섭외 및 외국중재판정 강제집행제도 연구”, 「중재연구」, 제15권 제2, 한국중재학회, pp.263-292, 2005.
- 최장호, 「상사분쟁관리론」, 서울: 두남, 2003.
- 하현수, “중국의 국제상사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pp.25-46, 2012.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4-48(통권 619호), 2014.
- 程德鈞, 「最高人民法院關於執行我國加入的承認及執行外國仲裁裁決的公約通知」, 涉外仲裁與法律, 1987.
- 程德鈞, 「國際貿易爭議與仲裁」, 江蘇人民出版社, 2001.
- 國務院法制辦公室, 「中華人民共和國仲裁法注解與配套」, 中國法制出版社, 2008.
- 韓德培, 「在現代國際法律關係中進一步加強國際化仲裁制度」, 武漢大學出版社, 1997.
- 韓 健, 「現代國際商事仲裁法的理論和實踐」, 法律出版社, 1993.
- 林一飛, 「外國仲裁裁決的承認與執行: 中國二十年的司法實踐」, 外貿大學出版社, 2009.
- 史 飆, 「商事仲裁監督與制約機制研究」, 知識產權出版社, 2011.
- 王 菊, 「論我國涉外仲裁的監督機制」, 「國際商務研究」, 第4期(4), pp.46-51, 2000.
- 王生長, 載陳安, 「外國仲裁裁決在中國的承認與執行」, 法律出版社, 1999.
- 楊建紅, 「論仲裁和解的形式處理」, 「仲裁與法律」, 第2期(2), pp.38-44, 2003.
- 叶 明, 「試論CIETAC2005年仲裁規則的修改與完善」, 「寧波大學學報(人文科學版)」, 第20期(1), pp.125-128, 2007.
- 詹慧娟, 「紐約公約第五條中公共政策條款與正當程序條款的適用」, 「北京仲裁學刊」, 第2期(2), pp.21-36, 2009.
- 趙秀文, 「國際商事仲裁法」,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4.
- 趙 衍, 「我國對外國仲裁裁決承認與執行制度解析」, 「政治與法律學刊」, 第4期(4), pp.64-67, 2000.
- Farina, Anne Judith, ““Talking Dispute into Harmony” China Approaches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merican Univ. Int'l Law Rev.*, Vol. 4, Issue 1, pp.131-171, 2011.
- Liu, G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History, New Developments, and Current Practice”, *J. Marshall L. Rev.* Vol. 28, Issue 3, pp.539-566, 1995.
- WTO, World Trade Report 2015, 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wtr15-1_e.pdf (2017년 6월 1일 검색)
- UNCITRAL <http://www.uncitral.org/> (2017년 5월 11일 검색).
- 中國裁機關 <http://www.gov.cn/> (2017년 5월 10일 검색).
- 중국국제경제중재무역위원회(CIETAC) <http://cn.cietac.org/> (2017년 5월 16일 검색).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China

Jing Li* · Sungho Park**

The purpose of this article by looking into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of China is to provide solutions regarding commercial disputes that may occur in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For the research,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e Chinese Arbitration Law and CIETAC Arbitration Rules was employed.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arbitration system of China applies partially differentiated legislation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unaccepting any ad-hoc arbitration, a limitation to the party autonomy, a deficiency of independence given to the arbitral institution, the participation of jurisdiction on arbitration is severe and it brings hardships in the execution of arbitral award. Beside these, in China's arbitral institution the jurisdiction directly progresses adjustments during the arbitration procedure and the following result is written as the award.

Thus, the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legal and practical solutions to the commercial dispute with Chinese companies by looking into the main contents of legisl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China.

Key Words : Chinese Arbitration Law, CIETAC, Commercial Arbitration, Commercial Arbitration Procedure, Agreement of Arbitration

* Maste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Keimyung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 International Commerce, Keimyung University